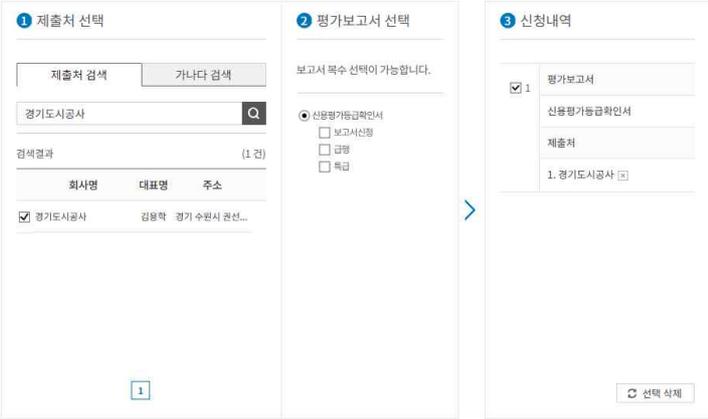


경기도시공사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안내문

- 신용평가기관 : 한국기업데이터(주)
- 신청보고서 종류 :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
- 신청 및 발급 절차

1. 회원가입 및 신용평가 신청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(www.kedrating.com)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색 창에서 [경기도시공사] 검색 • 신용평가신청 클릭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「신용평가등급확인서」 보고서 선택 ② 「바로신청」 선택 ③ 이용 약관 동의 후 「다음」 선택 → 결제하기 ④ 평가수수료 결제

2. 서류제출

- ① 수수료 입금 후, 신용조사·평가자 배정
- ②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를 2~3일 내에 준비하여 조사담당자에게 제출
 - 제출서류 : 신청사이트 오른쪽 Quick Menu 자료제출 참조
 - 담당자 확인 : 신청 1~2일 후 신청사이트 Quick Menu의 담당자 찾기 확인

3. 평가완료 및 제출

- ① 기업신용평가서 발급 및 제출처로 전송(자동전송)
- ② 2019년 평가 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기업
 - www.kedrating.com → 「평가신청」 → 「보고서추가제출」에서 제출처를 '경기도시공사' 선택 제출
 - ※ 서류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~10일 소요 예정

◆ 문의처 한국기업데이터(주) : 1811-8883, 8884

고객제출자료 준비안내(신용평가)

구분	서류명	발급처	비고	양식
공통	사업자등록증 사본	국세청 또는 자체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제출(FIND SYSTEM)시 서면사본 제출 생략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(사업자등록증명원) 	국세청
	재무제표 (비교식)	국세청 또는 세무사/회계사 사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제출 원칙 온라인 제출 방법 : FIND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 ※FIND SYSTEM 문의 : 02-3279-6500 - 최근 3개년(재발급시 1개년) 재무제표(재무상태표/손익계산서/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/제조(공사)원가명세서) - 감사보고서 제출시 제조(공사)원가명세서 추가 필요 	국세청 또는 세무사/회계사 양식
	부가가치세 신고자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 제출(온라인 제출시 서면자료 제출 생략) 온라인 제출 방법 : FIND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 ※FIND SYSTEM 문의 : 02-3279-6500 - 당기 및 최근년도 부가세자료 -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담당자와 상의 	
	기업개요표	온라인 제출 or 수기 자체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- 온라인 제출 시 기업개요표의 수기 작성 및 제출 생략 - 온라인은 '기업개요표 작성하러 바로가기'에서 제출 	온라인 작성
	기업(신용)정보 및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조회 동의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기업데이터(주) 양식으로 자체 작성 	KED 양식
	대표자 등 현주소지 확인자료	주민센터 / 전자민원G4C / 출입국관리사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 현주소지 확인가능자료(택 1) - 1개월 이내 발급분 -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 준비 - 전자민원G4(www.egov.go.kr) ※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	
	법인등기부등본	등기소 / 대법원인터넷 등기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인등기부등본(관계기업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- 1개월 이내 발급분(말소사항 포함) 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	등본대행 서비스 신청기업은 해당 없음
	부동산등기부등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장/대표자 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- 1개월 이내 발급분(말소사항 포함) - 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각각 준비 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	
	주주명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시점 주주명부 	
	면허, 특허, ISO 등	자체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면허, 특허, ISO, 표창 수상 내역 등 증빙서류 사본 	
관계기업 관련자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계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주명부, 당기 재무제표 		

※ 작성 및 제출은 www.kedrating.com → 기업자료제출 → '자료제출'에서 처리